

	학업성적처리규정	규정번호	3-4-17
		제정일자	1997.03.01.
		개정일자	2020.06.01.
		개정차수	6차
		소관부서	교무입학처

- 제1조(목적) 이 규정은 학칙에 따라 학업성적을 처리하는 제반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- 제2조(적용범위) 이 규정은 학칙 제45조, 제46조, 제47조 및 학칙시행세칙 제32조에 의한 중간(임시)고사, 학기말고사의 학업성적에 대하여 적용한다.
- 제3조(성적의 평가 및 분포) ① 성적평가는 상대평가를 원칙으로 하되, 교과목 특성에 따라 절대 평가 등 성적평가 방법을 달리 할 수 있다.
 ② 학업성적은 학칙 제45조, 제46조 및 학칙시행세칙 제32조에 따라 평가하며, 비율은[별표]와 같다.
- 제4조(성적의 표기방법) 평점의 성적표기는 학칙 제46조에 따른 등급(A⁺, A⁰, B⁺, B⁰, C⁺, C⁰, D⁺, D⁰, F, P, NP)으로 한다.
- 제5조(성적의 열람) 성적의 열람은 학기말 시험 최종일로부터 2주 이내에 소속학과에서 학생들에게 최소 3일 간의 열람기회를 부여한다.
- 제6조(성적보고 시한) 모든 학과목의 성적단표는 학기말시험 최종일로부터 2주 이내에 교무입학처에 제출하여야 한다. 외래강사의 담당과목 성적에 대한 열람 및 제출은 소속학과장이 책임지고 이행하여야 한다.
- 제7조(성적의 정정) ① 해당학기 성적을 열람한 후 학생이 성적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성적의 열람기간 내에 과목담당교수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, 과목 담당교수가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성적정정 열람기간 내에 정정하여야 한다.
 ② 오기 또는 착오로 인한 성적정정은 열람기간 내에 행하여져야 하며, 외래강사의 성적은 학과장의 책임하에 동일하게 행한다. 다만, 교무입학처에 제출된 이후의 성적은 정정할 수 없다.
- 제8조(개정) ① 이 규정을 개정 할 경우 개정안의 취지, 주요내용 또는 전문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5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.
 ② 대학의 교직원 및 학생은 공고된 개정안에 대하여 그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.
 ③ 당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제출된 경우 의견을 제출한 자에게 그 제출된 의견의 처리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.
 ④ 공고된 이 규정은 학과장회의 및 교무학사운영위원회 자문을 거친다.

부 칙

이 규정은 1997 년 3 월 1 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이 규정은 2008 년 3 월 1 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이 규정은 2011 년 9 월 1 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이 규정은 2012 년 6 월 1 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이 규정은 2015 년 3 월 1 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이 규정은 2016 년 5 월 1 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이 규정은 2020 년 6 월 1 일부터 시행한다.